

최신 판례 예규

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

서면법인-4314, 2020.05.26

【 질 의 】

-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
 - (질의 1)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
 - (질의 2) 질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법인이 차입하여 B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두 법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

【 회 신 】
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-0...8 <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>

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.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.

○ 법인세과-757, 2009.07.02

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, 담보의 제공, 차입금의 수령,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
Marketing Tax consulting

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그대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가액을 변경하지 않음

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

사전법령소득-468, 2020.06.12

【 질 의 】

- 수십년간 6인이 ◎◎동 소재 ☆☆빌딩을 공동소유하면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자 3인이 탈퇴하고 그 공유지분을 존속하는 공동사업자 3인이 취득함
-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

【 회 신 】

귀 사전답변의 경우,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.

정부업무대행단체인 ◇◇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·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

서면법령부가-3650, 2020.08.21

■ 질 의

- 질의법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·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「도로법」, 「도로표지규칙」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휴게소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·관리하고 있음

질의요지

- 정부업무대행단체인 ◇◇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예고표지 설치 및 유지·관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

■ 회 신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 ◇◇공사법에 의한 ◇◇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하여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예고표지를 유지·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.

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

사전법령법인-1010, 2020.11.27

■ 질 의

- 내국법인이 2018~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2020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
 - 2020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2018~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
 - 2018~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으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2020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
■ 회 신
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서면-2020-법령해석법인-1283, 2020.09.28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서면-2020-법령해석법인-1283, 2020.09.28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